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2016년 9호

FTA 원산지사후검증 현황 및 시사점

2016년 3월

통상연구실 박지은 수석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CONTENTS

I. 원산지사후검증 개요 및 주요 내용	1
1. 원산지사후검증 개요	1
2. 원산지사후검증 주요 내용	2
II. FTA 활용기업에 대한 원산지사후검증 설문조사	5
1. 설문조사 개요	5
2. 설문조사 결과	6
III. 수출기업의 원산지사후검증 대응 3계명	14
IV. 결론 및 시사점	19

☐ 보고서 내용 문의처

통상연구실

박 지 은 수석연구원 (☎02-6000-5342, jieunpark@kita.net)

원산지사후검증은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한·중 FTA에 따른 원산지 검증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업계의 검증대응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EU FTA, 한·미 FTA 발효 2년차에 사후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올해 하반기부터 한·중 FTA에 따른 중국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사후검증은 FTA 수혜품목의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검증방법과 절차는 한국과 FTA를 발효한 14개 협정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 FTA에 따른 검증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협정에서 정한 회신기간 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무역업계의 FTA 원산지사후검증 대응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FTA 활용기업 35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7.3%가 FTA 원산지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실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많거나 향후 증가를 예상하는 기업이 86.3%에 달하지만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2.8%에 불과해 우리 업계의 사후검증 대응 역량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FTA 활용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세 추징, 벌금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기업의 39.0%가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6%에 불과했다.

대체적으로 원산지관리의 기본이 되는 자료보관은 잘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에 한해 입증서류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22.8%)하거나, 관세 혜택 및 원산지기준 충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분류(HS 코드)가 수출국과 상이한 물품을 공급(20.8%)하는 등의 사후검증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는 원산지관리 필요성을 많이 체감하지만, 상당수가 원산지사후검증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해(59.1%) 원산지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에도 기업규모별로 10인 미만의 소기업은 FTA 이해부족, 100인 미만의 기업은 중소기업은 사후검증 절차 이해, 300인 미만의 중견기업은 협력사 관리 및 시스템 도입 비용으로 인한 상대적 애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원산지 사후검증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는 FTA 원산지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①FTA별로 검증 트렌드를 파악하고, ②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③사후검증 대응 시 기존의 자료를 재가공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계약단계에서부터 수입자-수출자, 수출자-국내 공급업체 등 당사자간 사후검증 대응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사후검증 지원 컨설팅(☎ 1380), FTA 재직자 교육,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과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등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문

I. 원산지사후검증 개요 및 주요 내용

1. 원산지사후검증 개요

■ 원산지사후검증(Origin Verification)은 FTA 수혜품목의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행정절차를 의미

- FTA 체결국 간에는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관세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며, FTA 체결국간의 거래에서만 특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사후검증을 시행

- 제3국산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와 원산지조작을 통한 관세 탈루를 막기 위한 것으로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한 방법 및 조치들은 FTA 협정문과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FTA 상대국과의 수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사후검증 빈도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업계의 체계적인 사후검증 대응 필요성은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한국의 FTA 발효국이 51개국으로 확대¹⁾되고 FTA 체결국과의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71.0% 차지하여 FTA를 통한 교역이 증가

- 이에 EU를 중심으로 원산지사후검증도 큰 폭으로 증가

- 관세청에 따르면 2012년 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출검증은 2014년 302개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수입검증 역시 110개사(2011년)에서 846개사(2014년)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협정별로는 한·EU FTA의 사후검증이 가장 많았는데, 수출은 전체의 80.5%, 수입은 전체의 56.5% 차지

1) 한국은 현재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터키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등 총 51개국과 14건의 FTA가 발효 중

2. 원산지사후검증 주요 내용

■ 원산지사후검증은 FTA 특혜 적용요건인 ①원산지기준, ②직접운송원칙, ③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및 발급절차, ④자료보관 의무 등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며 협정별로 상이한 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사후검증은 협정별로 검증주체에 따라 직접검증, 간접검증, 혼합검증으로 분류되어 시행

– 직접검증 방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국 수입자 뿐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방식이며 대표적으로 한·미 FTA가 해당

– 간접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의 검증요청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출자나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 충족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한·EU FTA, 한·터키 FTA가 채택

〈주요 협정별 원산지사후검증 상세 절차①〉

 (직접 검증) 한·미국 FTA	 (간접 검증) 한·EU FTA
(검증 개시) ① CBP Form 282를 통해 생산 관련 주요 자료 요청 ② 수입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미 세관에 제출(제출 시기 연장 가능)	(검증 개시) ① EU 관세당국은 우리 관세당국에게 검증 의뢰 ② 우리 관세당국은 7일전 서면조사 사실을 수출자에게 통지하고 “표준질의서”를 통해 원산지소명 자료 요청 ③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자료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기한 30일 연장 신청 가능(1회)
(검증결과 통보) ① 미 관세당국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면 결과를 통보하고 검증 종료 ② 소명이 충분치 못하면 예비결정(Proposed) 또는 최종결정(Has been taken)을 내리고 피검증자에게 CBP Form 29(Notice of Action, 결과통지서)로 결과 통보	(검증결과 통보) ① 우리 관세당국은 조사종료 3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② 수출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우리 관세당국은 EU 관세당국에게 검증결과 통보 * 검증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개월 이내 조사결과를 회신해야 함

2) CBP Form 28(Request for Information, 정보제공요청서)은 FTA 원산지검증만을 위한 서식은 아니며 수입통관 및 심사 절차상 필요한 특정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미 세관)가 사용하는 서식. 일반적으로 서식의 14번 항목(CBP Officer message)에 FTA 원산지검증임을 나타내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그 외에 CBP Form 29(Notice of Action, 결과통지서)가 있으며 미 관세당국은 CBP Form 28/29를 활용하여 검증 착수 및 종료

- 혼합검증은 간접 또는 직접검증 중 선택하여 수행하거나 혼합하여 검증하는 방식으로 ①先 간접검증, 後 직접검증은 한·아세안 FTA, 중국과의 FTA가 해당되며, ②간접/직접 검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페루와의 FTA가 해당

〈주요 협정별 원산지사후검증 상세 절차②〉

 (혼합 검증) 한·아세안 FTA	 (혼합 검증) 한·중국 FTA
원칙적으로 수출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 방식이지만 수출국에서 시행한 검증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 직접검증 방법 채택 (간접검증) ① 수입국으로부터 검증요청을 받으면 수출국 관세당국은 조사를 수행하고 2개월 내 결과를 조사 대상자 및 수입 관세당국에 통보 ② 수입국은 수출국의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심사하고 수출국에 결과를 통보 ③ 6개월 이내에 검증 완료되어야 함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서면 검증, 수출국 관세당국을 대상으로 간접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문검증을 수행할 수 있음 (간접검증) ① 수입국으로부터 검증요청을 받으면 수출국 관세당국은 조사를 수행하고 6개월 내 결과를 수입 관세당국에 통보 ② 수입국은 검증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원산지 판정 결과를 수출 관세당국에 통보
(직접검증-방문조사) ① 수입국 관세당국은 현지조사에 앞서 방문예정일, 조사범위 등의 내용을 서면 통보해야 함(통보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기 신청 가능) ②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당사국 합의 기간 내에 현지조사가 완료되어야 하며 6개월 이내 검증 결과를 수출자와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함	(직접검증-방문조사) ① 수입국이 수출국에 방문검증을 실시할 경우 검증 30일 이내에 수출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② 직접 방문 검증은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함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미 FTA 사례로 알아보는 원산지사후검증 대응」, 2015.11월, pp.11~16.

- 검증방법과 절차는 한국과 FTA를 발효한 14개 협정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 FTA에 따른 검증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협정에서 정한 회신기간 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함

[참고]

〈협정별 원산지사후검증 방식〉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간접	직접		간접	직접	
발효일자	2004.4.1	2006.3.1	2006.9.1	2007.6.1	2010.1.1		2011.7.1	2011.8.1		
검증방식	직접		간접	先간접,後직접			간접	간접/직접		
서면검증										
회신기한	30일		10개월	2개월	3개월	30일	10개월	150일	90일	
연장신청	1회, 30일 이내		－	－	－	－	－	－		
완료기한	－		－	6개월 이내 간접검증 완료			－	－		
방문검증										
서면통보	○			○				○		
서면동의	서면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연장신청	서면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서면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연장기간	1회, 60일 이내			연장포함 60일 이내 ¹⁾				－		
완료기한	－			최대 6개월 이내 방문검증 완료				1년 이내에 검증결과 통지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일반	섬유						
발효일자	2012.3.15		2013.5.1	2014.12.12	2015.1.1	2015.12.20	2015.12.20	2015.12.20
검증방식	직접	간접	간접	직접(간접병행)	직접	先간접, 後직접		직접
서면검증								
회신기한	－		10개월	30일	－	6개월		90일
연장신청	－		－	30일 이내	－	－	－	－
완료기한			－	－		3개월 이내 ²⁾ 간접검증 완료	10개월 이내 간접검증 완료	－
방문검증								
서면통보	○		○		○			
서면동의	○		서면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연장신청	－		－	서면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방문검증 동의시	서면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연장기간	－		－	1회, 60일 이내	60일 이내	연장포함 60일 이내 ¹⁾	－	
완료기한	－		－	－	－	최대 6개월 이내 방문검증 완료	1년 이내에 검증 결과 통보	

주 : 1. 연장 포함 60일 이내 또는 양국 합의 기간 내

2. 결과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료 : 14개 협정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Ⅱ. FTA 활용기업에 대한 원산지사후검증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원산지사후검증제도와 관련하여 FTA 활용 기업의 필요성, 인지도, 대응역량, 애로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 무역업계의 원산지사후검증의 대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FTA 활용 경험이 있는 무역업체로 한정하여 원산지사후검증 이해, 업계 대응 역량,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이에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351개 FTA 활용 기업이 설문에 응답

【 설문 조사 개요 】

- 조사대상 : FTA 활용 경험이 있는 무역업체 대상으로 랜덤 표본 추출
- 유효표본 : 351개 업체
- 조사기간 : 2016년 2월 12일~18일
- 조사방법 : 구조화 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Web Survey)
- 수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 응답업체 351개사의 FTA 활용 정도는 적극 활용(5.1%), 활용(23.4%), 보통(41.3%), 가끔 활용(30.2%) 등으로 나타남

－ 사업형태별로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전체 응답업체의 87.2%로 높은 비중을 보임

* 사업형태별로 수출(29.6%), 국내납품/수출 혼재(26.8%), 국내납품/수출/수입 혼재(21.9%), 수출/수입 혼재(8.8%) 등으로 나타나 수출 참여 업체가 전체 응답업체의 87.2%를 차지

－ 응답업체 351개사 가운데 94.6%는 종업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다수인 우리나라 기업 분포에 부합

<조사대상의 특성>

(단위 : 개사)

FTA 활용 정도		사업형태		회사규모	
적극 활용	18	국내 납품	22	10인 미만	164
활용	82	수출	104	10~99인	135
보통	145	수입	11	100~299인	33
가끔 활용	106	혼재	214	300인 이상	19
합계	351	합계	351	합계	351

<업종별 비중>

(단위 : %)

업종	농림수산물	광산물1)	화학, 플라스틱, 요업, 제지	가죽,섬유류	생활용품, 뷰티, 화장품
비중	7.1	0.6	19.7	14.2	9.4
업종	철강, 비철금속	기계류, 선박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기타
비중	7.4	9.4	13.7	13.4	5.1

주 1 : 석유제품, 광물성연료, 금속광물, 비금속광물 등을 포함

2. 설문조사 결과

- FTA 활용 기업은 원산지관리에 대한 필요성 및 관리 중요성 등을 체감하고 있고,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요청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한 이해, 대응역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협정별에 따라 조사결과에서 차이가 미미하여 기업규모별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봄
- 현재 해외 수입업체 또는 국내 구매 업체로부터 원산지서류 요청이 많거나 증가를 예상하는 기업은 전체 FTA 활용 기업의 86.3%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사후검증 대응이 가능한 기업은 32.8%에 불과
 - 특히 사후검증 대응역량을 기업규모별로 5점 척도로 환산하였을 때 300인 이상 대중견기업이 3.6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100인 미만 기업은 3.0점으로 나타남

<주요 결과 요약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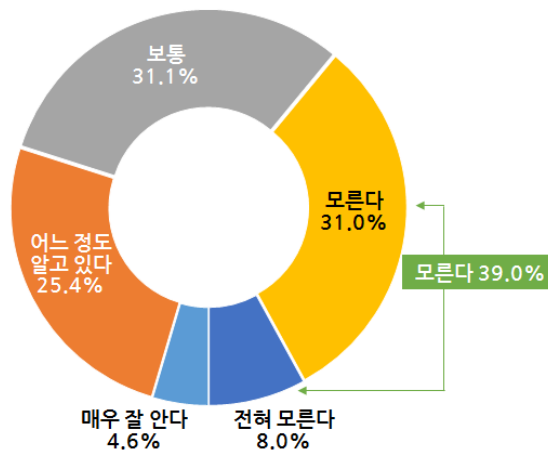
항목	현황	5점 척도				
		전체	10인 미만	10인~99인	100인~299인	300인 이상
필요성	FTA 원산지 관리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업은 67.3%	3.8	3.7	3.9	4.0	3.9
인지도	FTA 실제 활용 기업 중 원산지관리를 이해하는 기업이 39.0%에 불과	2.9	2.8	3.0	3.2	3.2
원산지서류 발급 전망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많거나 증가를 예상하는 기업은 86.3%	3.8	3.7	3.8	4.1	3.9
대응역량	사후검증 대응이 가능한 기업은 32.8%	3.1	3.0	3.0	3.4	3.6

(1) FTA 원산지사후검증 이해

- 응답기업의 39.0%가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모른다 31.0% + 전혀 모른다 8.0%) 매우 잘 알고 있는 기업은 4.6%에 불과
- FTA 특혜관세 적용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관세추징, 가산세, 벌금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에도 사후검증에 대한 FTA 활용 업계의 인지도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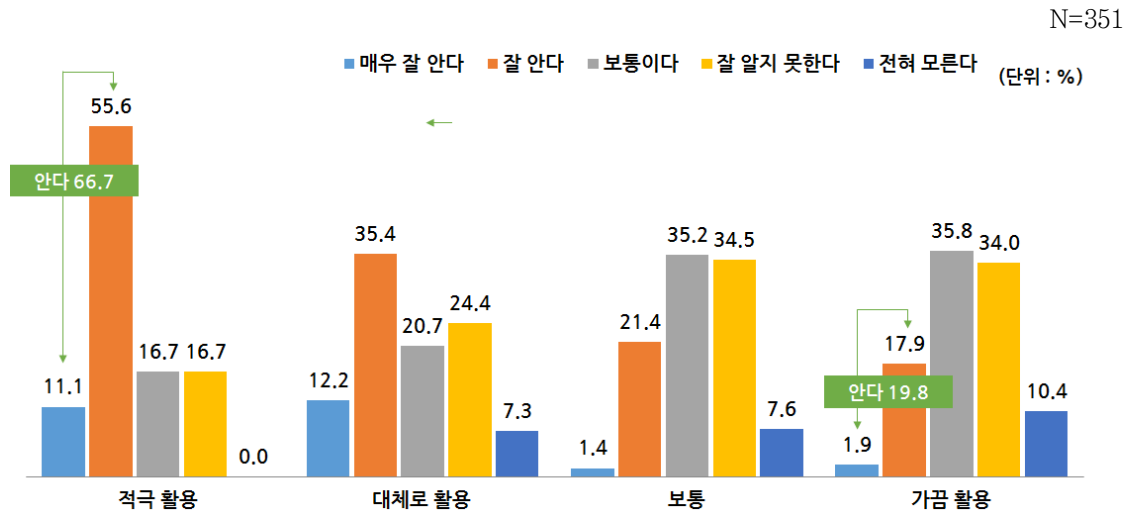
<원산지사후검증 이해>

N=351



- FTA를 적극 활용하는 업체의 사후검증 인지도는 66.7%(매우 잘 안다 11.1%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5.6%)로 높은 반면, FTA 활용 빈도가 낮은 업체는 19.8%(1.9% + 17.9%)로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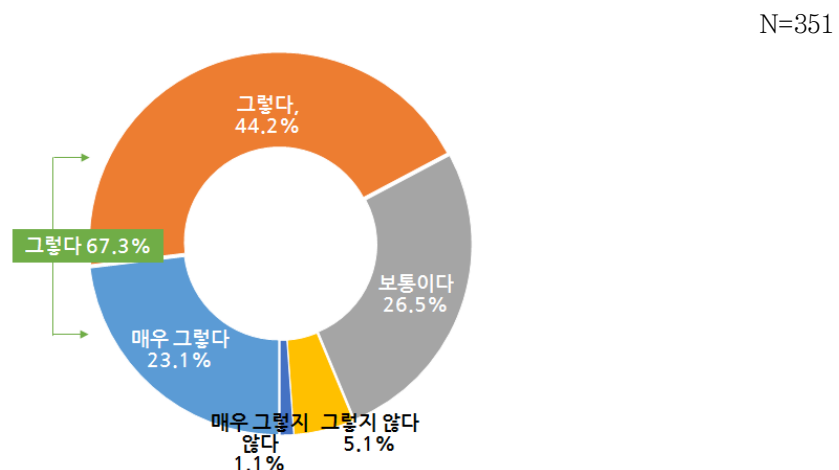
<FTA 활용 정도에 따른 원산지사후검증 이해>



(2) 원산지관리 필요성 및 원산지서류 발급 요청

- 응답업체의 67.3%는 FTA 원산지관리의 필요성을 많이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FTA 활용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수요는 높은 것으로 파악됨

<원산지관리 필요성에 대한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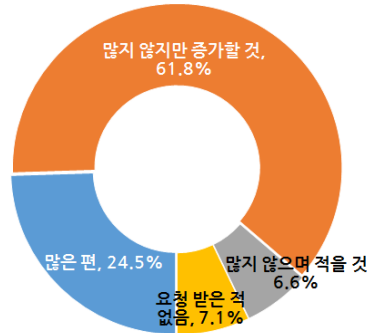


■ 구체적으로 응답업체의 61.8%가 현재 해외 수입업체 또는 국내 구매 업체로부터 원산지서류 요청이 많지는 않으나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현재 원산지서류 발급요청이 많다고 응답한 업체도 24.5%에 달해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필요성은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해외 수입업체, 국내 구매업체의 원산지서류 요청>

N=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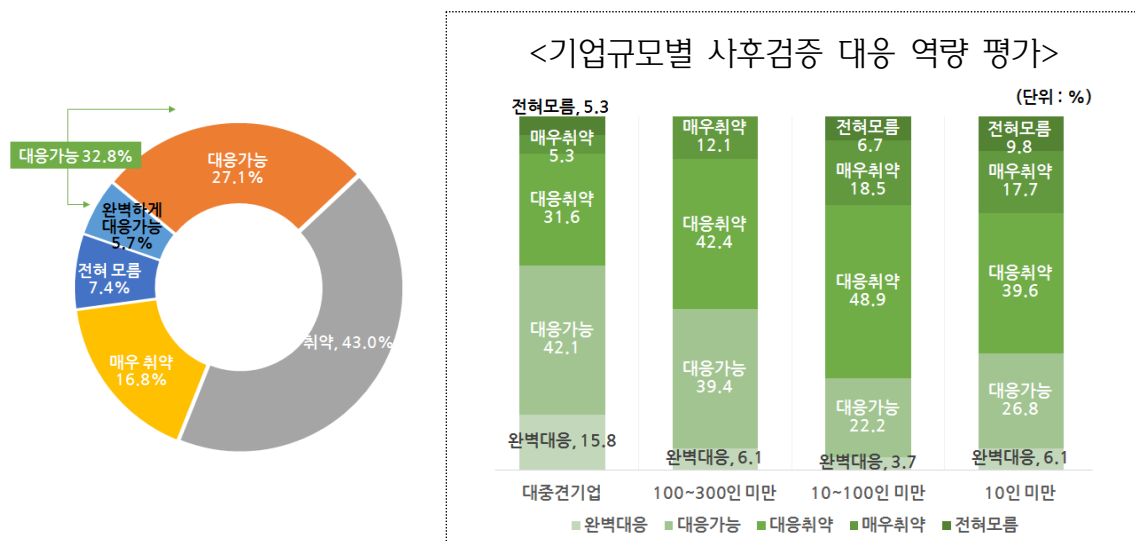


(3) FTA 원산지사후검증 대응역량

■ 원산지사후검증 대응역량을 평가하는 질문에 32.8%만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고, 59.8%는 취약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사후검증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업체도 7.4% 차지

<사후검증 대응 역량 평가>

N=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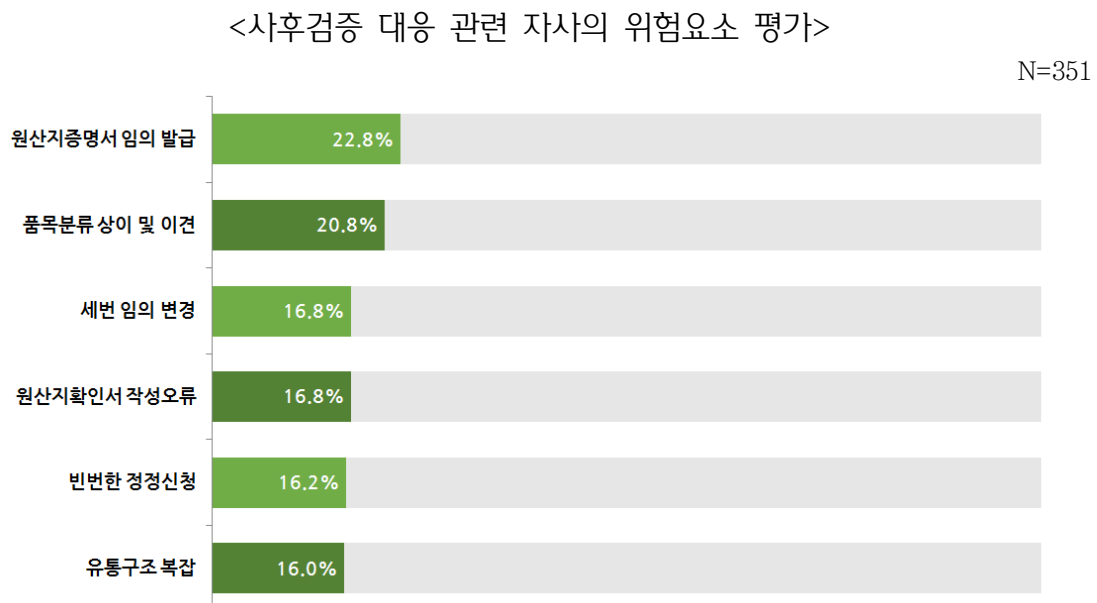


- 중견·대기업(300인 이상)의 57.9%가 자사의 사후검증 대응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32.9%만이 사후검증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사되어 기업규모에 따라 사후검증 대응역량에 큰 격차를 보임

(4) 원산지관리 위험요인 및 서류관리

■ FTA 활용 기업들에게 사후검증 관련 자사에 노출된 위험요소를 묻는 질문에 22.8%가 원산지입증서류 확보 없이 원산지증명서(또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힘

- 이어서 국가간 품목분류가 상이하거나 이견이 있는 물품 수출/공급(20.8%), 협력사의 요구에 의해 원산지확인서상 HS코드 임의 변경, 원산지확인서 작성 오류의 빈번한 발생(각 16.8%) 등의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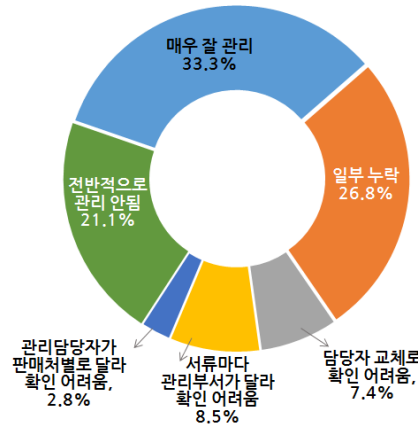
■ 원산지사후검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산지 증빙서류 관리 및 보관 현황에 대해 응답업체의 33.3%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 반면, 일부 누락(26.8%),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21.1%) 등의 부정적 평가도 상당수 존재

- 이 외에도 원재료명세서, 거래관계 증빙자료 등 서류마다 관리부서가 달라서 확인이 어렵고(8.5%), 담당자가 바뀌어서 확인이 힘들다는 의견(7.4%) 순

<원산지증빙서류 관리 및 보관 현황>

N=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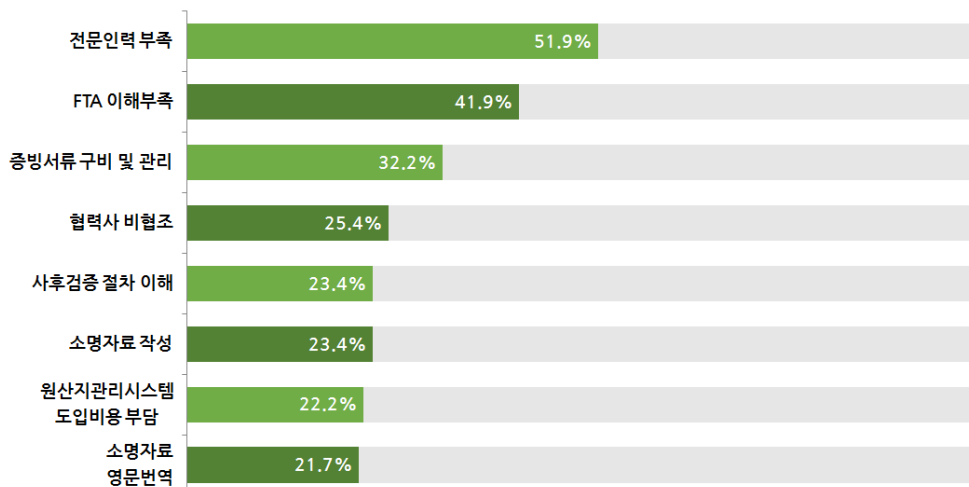
(5) 원산지관리 업무 애로사항

- 원산지관리 업무의 애로사항에 대해 응답업체의 과반 이상이 전문인력이 부족(51.9%)하다고 밝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중급 수준 이상의 원산지관리 업무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필요성을 제기

- 이 외에도 HS 품목분류 및 원산지기준 이해 부족(41.9%), 원산지 증빙서류 구비 및 관리(32.2%), 원산지확인서 발급 등 협력사 비협조(25.4%) 등이 애로사항으로 나타남

<원산지관리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

N=351



■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은 FTA 이해부족, 중소기업은 사후검증 절차 이해, 중견기업은 협력사 관리, 시스템 도입 비용에서 상대적 애로가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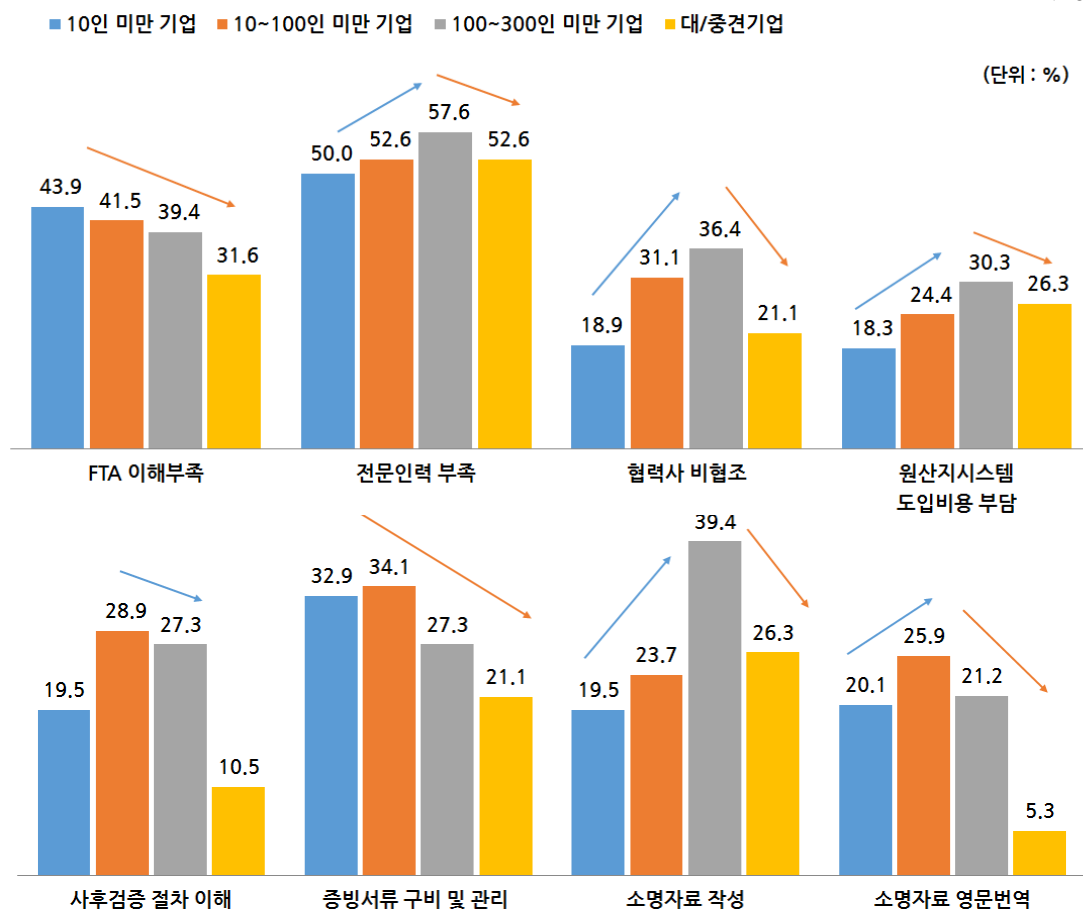
- (10인 미만)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의 경우 FTA 전반적인 이해에 어려움 (43.9%)을 가장 크게 느꼈으며 협력사 비협조(18.9%), 원산지시스템 도입비용 부담(18.3%) 응답은 높지 않았음

– 소규모이기 때문에 협력사 관리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고, 취급품목이 많지 않아 별도의 원산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10인~100인 미만) 사후검증 절차 이해, 증빙서류 구비 및 관리 등 가장 사후검증의 기본이 되는 업무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음

<기업규모별 원산지관리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

N=351



- (100인~300인 미만) 협력사 관리(36.4%), 원산지시스템 도입비용 부담(30.3%), 소명자료 작성(39.4%) 등에서 상대적 애로가 컸음
- 취급품목이 많기에 체계적으로 협력사를 관리하고, 소명자료 작성을 원활하게 하는 원산지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크지만 FTA 때문에 투자를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으로 추정

III. 수출기업의 원산지사후검증 대응 3계명

✓ FTA별로 검증 트렌드를 파악하라.

- 원산지사후검증은 협정별로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검증에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산지요건 충족 뿐 아니라 각 협정마다 검증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 (한·EU FTA) 검증요청이 가장 활발한 한·EU FTA의 경우 인증수출자 유효성 확인이 필수적임
 - 인증수출자 번호와 체계가 다를 경우 검증의 대상이 되기 쉬움
 - * 일반적으로 인증번호는 국가명/세관번호/일련번호 등으로 구성
 - 또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인증 받지 않은 품목³⁾에 대한 FTA 적용은 불가하여 이를 유의해야 함
- (한·미 FTA) 사후검증 요청이 수입자를 통해 오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섬유 검증의 경우 실제 생산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검증의 핵심

사후검증 대응 사례 ① 명시한 기한 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2015년 1월의 미국 수출건에 대해 미국 포워더(forwarder)에게 이메일을 통해 2015년 10월 1일 CBP Form 28(미국 세관의 정보제공요청서)을 전달 받음
한·미 FTA의 경우 30일 이내에 자료 요청에 대해 회신해야하기 때문에, 검증 전략을 세우고, 소명 자료를 시급히 작성하여 10월 29일에 회신을 마쳐 검증에 대응할 수 있었음

미국의 경우 회신 기한 연장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수입자에게 통보를 늦게 받아 회신 기한에 임박하여 CBP Form 28을 전달받았다면, 이메일 수신 시점을 캡처해 연장신청을 하여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검증 대응에 전략이 됨

3)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업체별,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5년임. ①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대해 유효하지만, ②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 받은 협정과 HS 6단위에 한해서만 유효함

사후검증 대응 사례 ② 섬유의 경우 실제 생산능력 확인이 검증의 핵심

지난 해 6월 미국 관세청(CBP)에서 2주 일정으로 사전통지 없이 섬유·의류 10개사를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며 ①관련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②공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생산공정 수행 및 역외산 원재료 사용 가능성 등을 검증하였으며, 이 때 수출업체의 제조설비 유무가 검증의 주요 이슈가 된 것으로 알려짐

* FTA 원산지 검증을 위해 수출국 방문시 사전통지를 하게 되어 있으나 한·미 FTA 섬유 검증에 한해서는 사전통지 없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자료 : 'Origin Verification Brief,' 관세청, 2015-1호, 2015.7.1

- (한·아세안 FTA) 실질적 요건인 원산지기준 위반보다는 원산지증명서 작성 오류 등의 형식상 요건 미비로 특혜세율이 배제되는 경향이 높음

〈주요 협정별 사후검증 이슈〉

FTA	검증유형
EU	-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검증 요청 다수로 수출규모가 큰 대·중견기업의 검증 비율이 높음 - 무작위(random) 검증 요청 다수 - 인증수출자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가 다를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또는 인증받은 품목이 아닌 경우 검증의 대상이 됨
미국	- 영세 기업까지도 검증 - 섬유·의류 업체에 대해서는 생산기반 유무를 집중적으로 검증 - 반덤핑 이슈 (예 : 미국에 중국에 대한 반덤핑 이슈가 있을 때 미국세관은 한·미 FTA 활용 품목에 대해 중국산 우회수출에 대한 우려로 해당 품목에 대해 더욱 철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을 하는 경향이 있음)
아세안	- 원산지증명서 작성 오류로 FTA 특혜세율이 배제되는 경향이 높음 (예 : 원산지증명서 뒷면 overleaf notes 미인쇄,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행하는 경우 '소급발행'을 미기재)

자료 : 관세청 보도자료 및 FTA종합지원센터 상담 내용 분석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해라

- FTA 협정에서는 우회수출 또는 원산지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품목별로 해당 국가의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놓고 있으며 따라서 원산지사후검증 대응 전략도 이러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따라 달라짐
- (완전생산기준⁴) 검증대응) 생산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나 특정 서식이나 자료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증빙자료가 모호할 수 있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생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

[참고]

① 광물성 생상품

- 우리나라 광업법에 의해 규정된 자료 중 ‘광업허가서’, ‘채굴량 보고서’, ‘광물 생산 보고서’, ‘갱내 실측도’ 등이 있음

② 농산물

- 우리나라 농지법에 의해 규정된 자료 중 ‘농지원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농업경영계획서’ 등이 있으며, 특수작물(인삼)의 경우, 해당 작물의 경작 및 유통을 관할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예 : 수산연금확인서) 등이 있음

③ 수산물

- 직접 어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어업면허증’, ‘가두리시설 설치증’, ‘구획어업 허가증’, 원양 어업의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원양어업허가증’, ‘원양어획물 반입신고서’, 수산물 가공의 경우에는 ‘수산물가공업 등록증’,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증’ 등이 있음

자료 : 한국무역협회, 「FTA 사후검증대응 완전정복!」, 2014.6월, p.8.

- (세번변경기준 검증대응) 역외산 원재료의 HS 코드가 완제품의 HS 코드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하므로 원재료 및 제품의 HS 코드분류가 일관성 있어야 하며 정확해야 함
 - 품목분류가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사전심사제도’ 등을 통해 관세당국의 인증 또는 사전 확인을 받은 경우 검증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음

4)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WO)은 모든 생산과정이 당사국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주로 1차 산품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임

- (부가가치기준 검증대응) 주로 관세당국은 완제품의 가격, 원재료별 재료비, 조정가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함
 - 구매, 등 회사 내에 산재된 검증 대응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화해야 하며 완제품 가격 산정시 각 협정에서 요구하는 조정가격(FOB, EXW 등)으로 환산하는데 유의하여야 함
 - * 원가자료, BOM(Bills of Materials, 자재명세서) 등은 경우에 따라 기업의 대외비 자료로 관리되기 때문에 가격 정보유출을 우려하는 경우 검증을 수행하는 관세당국으로 직접 제출 가능

사후검증 대응 시 기존의 자료를 재가공하는 관점에서 접근해라

- FTA 활용시 원산지 관련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검증이 들어왔을 때 기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재가공하는 관점에서 접근
 - 사후검증시 요청하는 서류는 주로 제조공정도, BOM(자재명세서), 원가 정보, 거래내역서 등의 자료이며, 증빙서류 작성시 품명, 규격, 수량 등이 상호 모순되지 않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⁵⁾
- 어떤 협정이든 검증주체가 되는 관세당국 실무자는 대상품목의 구성이나 생산 공정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관세당국의 눈높이에 맞게 소명 자료를 최대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함
 - 특히 직접검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등의 경우 모든 소명자료를 영문화하여 제출해야하기 정확한 번역과 의사소통이 검증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함
 - 검증자료 작성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후검증컨설팅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
 - * FTA종합지원센터 원산지지원실(☎ 1380)에서는 업계의 효과적인 사후검증 대응을 위해 사후 검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5) 제출된 서류만을 검토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관세당국은 ①역내산 원재료 소요량과 생산제품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②역내 생산자의 공급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경우, 역외산 원재료/물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소명자료 데이터를 서로 일치시켜야 함

사후검증 대응 사례 ③

두 번의 미국 직접검증, 한 번의 EU 간접검증을 경험한 B사는 세 차례의 사후검증을 대응하면서 검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해소되었으며, 사후검증 대응 이후 원산지관리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어 현재는 보다 체계화된 역내산 원재료 관리를 하고 있음.

다만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FTA 원산지관리만을 위한 별도의 서버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규모 투자가 어렵고 70~80종이 되는 품목의 BOM(자재명세서)을 모두 관리하는데 부담이 큼. 그러나 엑셀, ERP⁶⁾ 등을 통해 평소에 생산/구매 관련 서류관리를 잘 해놓는다면 충분히 검증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힘.

6)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는 회사의 자금, 회계, 구매, 생산, 판매 등 모든 업무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의미함

IV. 결론 및 시사점

-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한·중 FTA에 따른 원산지 검증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업계의 검증대응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한·EU FTA, 한·미 FTA 발효 2년차에 사후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춰 볼 때 올해 하반기부터 한·중 FTA에 따른 중국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한·EU FTA(2011년 7월 발효), 한·미 FTA(2012년 3월 발효), 한·중 FTA(2015년 12월 발효)
- FTA 활용 기업은 FTA가 확대될수록 원산지관리 필요성에 대해 체감하지만 자사의 사후검증 대응역량에 대해서는 취약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요구됨
 - 업계는 FTA 원산지 관리 필요성을 공감(67.3%)하고 있고, 실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많거나 증가를 예상하는 기업이 86.3%에 달하지만 사후검증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32.8%로 미흡한 수준
 - 대체적으로 원산지관리의 기본이 되는 소명자료 보관 및 관리는 잘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에 한해 입증서류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국가간 품목분류가 상이하여 사후검증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계는 중급 이상의 교육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사후검증 지원 컨설팅, FTA 재직자 교육,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또한 HS 품목분류에 대해 각 관세당국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비특혜 세번으로 분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임
- 정부는 기업규모별로 애로에 차이가 있어 기업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필요

- 원산지사후검증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계약단계에서부터 수입자-수출자, 수출자-국내 공급업체 등 당사자간 사후검증 대응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함
- 사후검증 대응 실패시 추징에 따른 손실분담비율, 상호 통보의무, 서류제공 등 당사자간 책임과 의무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
 - 특히,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한 협정의 경우 수입자가 한국 수출자에게 검증요청 사실을 늦게 통보할 시 검증대응에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후검증 관련 수입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함

FTA 원산지사후검증 현황 및 시사점

Trade Focus 2016년 9호

발행인 | 김인호

편집인 | 김극수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 2016년 3월 29일

인쇄처 |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 2-97호